

의정정보

10

2017-10호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 대구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6건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 등 4건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 스마트 농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등 3건

■ 타·시·도 의회 주요동향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 명령과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지방분권 실현 청사진 밝혀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2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대구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5)
- ▶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7)
- ▶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0)
- ▶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12)
-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14)
- ▶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 (16)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 (19)
- ▶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
- ▶ 무주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23)
- ▶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25)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충남 스마트 농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27)
- ▶ 논산 구도심 살리는 방안 모색 (34)
- ▶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전망 (43)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 서울특별시의의회 국민의 명령과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지방분권 실현 청사진 밝혀 (50)
- ▶ 인천광역시의의회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 업무협약 체결 (52)
- ▶ 강원도의의회 오색 석도설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촉구 (53)
- ▶ 충북도의의회 진로 체험의 장으로 인기몰이 (54)

최근 제·개정 법령

- ▶ 축산물 위생관리법 (56)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57)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대구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30.] [대구광역시조례 제5033호, 2017.10.30., 제정]

□ 주요목적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 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활동과 인문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그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 진흥을 위하여 대구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3. 기타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과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전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전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조정을 회피 할 수 있다.
- 제11조(인문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시행 2017.10.18.] [대전광역시조례 제5007호, 2017.10.18., 제정]

□ 주요목적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자”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나.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다.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다만, 유관기관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제3조(감정노동자 근로환경개선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근로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에 따른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정책
2. 감정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
3. 감정노동자의 노동 인권 보호 방안
4.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평가 반영 및 권고) 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관별 안내서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노동인권 교육) 시장은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문 부착 등) ① 유관기관의 장은 사업장에서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유관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 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 행위) 고객은 감정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제9조(보호 조치) ① 유관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충분한 휴식 보장. 다만, 고객의 생명, 신체, 중대 재산과 관련된 업무인 경우는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업무 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4.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의 장은 감정노동자가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0조(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권고, 안내서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과학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감정노동자보호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2.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3. 감정노동자·사업장 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

3.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10.18.] [대전광역시조례 제5023호, 2017.10.18., 제정]

□ 주요목적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항공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항공기”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이나 사전 프로그램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상황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
2. “무인항공기산업”이란 무인항공기를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항공기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인항공기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항공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인항공기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항공기산업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무인항공기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항공기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무인항공기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무인항공기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지원
 2. 무인항공기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무인항공기 창업 및 경영지원
 4. 무인항공기 전문인력 양성
 5. 무인항공기 시험비행장 조성
 6. 무인항공기 조종자 안전운행 교육 및 산업종사자 안전 교육
 7. 무인항공기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9.] [경상북도조례 제4009호, 2017.10.19., 제정]

□ 주요목적

경상북도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농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유통·판매 단계 :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시료 수거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 2017.10.15.] [광주광역시조례 제4952호, 2017.10.15., 제정]

□ 주요목적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용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
2.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창의·인성 교육과 연계한 환경생태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학교숲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숲은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여 조성
 3. 접근성 고려: 학교숲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 제6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장은 수목관리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 중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의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한다.
- 제8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 숲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

[시행 2017.10.18.] [대전광역시조례 제4998호, 2017.10.18., 제정]

□ 주요목적

저소득층 여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탐폰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학생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학생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택배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 위임 등) ① 교육감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수거함 비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거함을 비치하는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위생용품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학교의 장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교육감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 2018.1.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 제2356호, 2017.10.19., 제정]

□ 주요목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시간제 청년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제 청년근로자(이하 ” 청년근로자 “이라 한다)”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 중 19세 이상 29세까지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구하고 시간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환경에 처한 청년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취업 및 장려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선발·지원한다.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청년근로자 장려금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월별로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시간당 1천원으로 하며, 1일 최대 5천원까지 지급하고, 월 1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2년간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청년근로자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근무지·사업장(군 내 사업장에 한정함) 소재 읍장·면장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결정 및 지급) ① 읍장·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급자격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군수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월 20일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원활한 장려금 지급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지 2호서식의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거주불명 등록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군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2. 근무지를 그만 두었을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23.]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905호, 2017.10.23., 제정]

□ 주요목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 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울산광역시 중구 상업지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된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등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춤 허용업소의 지정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1. 영업자
 2. 영업소 명칭
 3. 영업소 소재지
 4. 영업장 면적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안전기준 등)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 하여야 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지켜야 한다.
 5. 비상구는 영업시간에 상시 열리도록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어야 한다.
 6.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은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7. 영업장 면적 100㎡ 이하는 종사자 중 1명 이상을 안전요원으로 고정배치 하고, 영업장 면적 100㎡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8. 정전 발생 시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 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2개, 객석 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 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 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춤 허용 시간) 춤 허용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은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 제9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처분 등) ①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 따라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5호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 무주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시행 2017.10.19.]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259호, 2017.10.19., 제정]

□ 주요목적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무주군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무주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마련 및 주민홍보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헌옷수거 재활용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헌옷수거함 설치·운영) ① 헌옷수거함은 차량의 통행상 불편 등 군민의 불편이 없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헌옷수거는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한다.

③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헌옷수거함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리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어 관리자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전에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헌옷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시행 2017.10.28.]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497호, 2017.10.28., 제정]

□ 주요목적

정읍시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생활안전에 도모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
7.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정읍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비용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연립 주택 거주자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제6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전라북도, 소방서,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부서 등과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남 스마트 농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17. 10. 13. (금), 14:00~17:00 /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총 평

이번 토론회는 충남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참석자 대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긍·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공유 및 관련 대안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농업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능동적 대안마련과 거버넌스에 입각한 쌍방향 정보공유,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및 정책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하였음.

특히 고령농, 중·소농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업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 대한 고려 및 생명자원으로서 농업의 가치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주요 토론 내용

① 주제발표

① 정창용 대표(풍일농장)

- 양돈농장인 풍일농장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및 시장개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축산업 선진화의 현실적 대안은 ICT 등을 활용한 정밀농업, 스마트팜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ICT 등을 활용한 양질의 관련 정보인 빅데이터의 세밀한 축적 및 관련 분석기술의 제공 및 활용방안이 중요함
- 농어촌 인구감소 및 절대 다수의 고령농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마련이 중요함
 - 전문가 집단의 관련 데이터 분석 및 분석된 데이터를 기초로 한 컨설팅 제공 방안
 - 구체적으로 천안시 통합 관제시스템 모델화 시범사업(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처럼, 전문가 또는 전문가 집단을 통한 다수의 관련 농장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고려할 필요 있음

② 정남수 교수(공주대)

- 4차 산업혁명이 농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합리적 고찰 필요
 - 유튜브(youtube)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은 누구나 정보제공, 제공된 정보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한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
 - 4차 산업혁명은 기존 혁명과 달리 다품종 소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농업 소외현상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성장의 한계

로 농촌성장의 상대적 가능성 증가

- 그러나, 기술변화·병해충·기후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농업 분야에서는 상품표준화의 변동가능성이 큼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스와트(SWOT) 분석 결과, 변화의 시기로 인한 공공주도의 4차 산업 인프라 구축, 창조의 시기도래로 민간 중심의 생태계 조성 필요

- 구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점의 변화, 즉 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 집약산업으로의 정책관점의 변화가 필요
-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패러다임 변화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ICT, IoT,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농어촌에 적용한 농어촌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필요

2 지정보론

① 홍승지 교수(충남대)

-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적 요소들이 농업·농촌 접목될 때, 일반적 및 유형별 표준화 기초기술개발의 필요성에 공감
- 다만, 이러한 기술표준화와 관련하여 충남 농업·농촌의 현실 및 문제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려가 필요함

② 이관률 박사(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특히 사회적 약자의 소외 가능성에 정책적 고려 필요
- 농민 대부분은 고령농, 중·소농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혁신 등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가능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임
- 농업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생산농정에서 과학농정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생명자원으로서 농업의 가치에 주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에 주목할 필요 있음

③ 최택용 과장(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내 스마트 농업팀을 신설하고, 물적 시설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온실 공사중
- 농촌진흥청, 도(道) 친환경농산과와 협력하여 스마트팜 관련 기술, 기계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며, 향후 확대할 예정임
- 현 단계에서 농업분야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7농가에 대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중임이며,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중임
-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농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질적 성과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3 청중토론

- 요즘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센터 등을 통한 먹거리 안전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관리자 등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직업군 등 농업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음. 따라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풍일농장 등에서 관련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함

[의견: 지역주민 2]

- ⇒ 풍일농장을 일반인에게 교육 및 홍보농장으로 개방하는 것은 어려움. 왜냐하면, 데이터 수집·분석 등 기술혁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육시설 자체의 현대화 등에 농장의 외적 요소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음.

[답변: 정창용 대표]

- ⇒ 전남 구례의 자연드림 복합시설처럼 생산, 가공, 교육 및 체험 등 다양

한 목적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설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여 교육 및 홍보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답변: 좌장 유병국 의원]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직업군과 관련하여, 우선 농업관련 교육의 목적을 생산중심에서 공유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농업분야 신(新)직업군으로 스마트팜 관리자 이외에 지역의 문화, 생태 등과 관련된 직업군을 유기적으로 만들어 소농 및 고령농 등이 4차 산업혁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방안 또한 강구하여야 함

[답변: 정남수 교수]

○ 스마트팜 관련 데이터 축적 등은 개인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왜 이에 대한 대가 없이 공유하여야 하는가?

[질의: 지역주민 3]

⇒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만이 생산성·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유함으로써 가치가 증대됨. 또한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고가의 장비구입을 위해 자부담 비용이 크기는 하나, 연구목적 또는 데이터 공유 목적으로 제공되는 물적 기반 확충 또한 가능함. 따라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존재함

[답변: 정창용 대표]

○ 스마트팜 등 기술혁신으로 농업관련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지역주민 4]

⇒ 기존의 농업생산과 관련된 전통적 일자리 감소는 피할 수 없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농업에 도입됨으로써 데이터

축적, 관리, 분석 및 컨설팅 등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또한 증대됨. 또한 생명, 생태, 지역, 문화 등 농업 및 농촌에 기반한 다양한 새로운 직업군이 나타날 가능성 높음

[답변: 이관률 박사, 정남수 교수]

- 충청남도 스마트 농업정책 관련 주무부서인 친환경농산과장의 관련 정책 등에 의견개진을 부탁함

[질의: 좌장 유병국 의원]

- ⇒ ① 현재 충청도는 980ha를 대상으로 현대화, 스마트화 관련 사업을 시행중임. 또한 '17년 현재 부여에 27ha 규모의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중이나, 참여농가의 부족 등 기존 시설농가와의 융합문제 등에 대안을 모색 중임
- ② 현재 농업 관련 데이터 수집은 기초단계이며, 아직 분석·공유·활용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못함
- ③ 그러나 현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ICT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목·분석·연구하고,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농업환경변화에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답변: 박지흥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장]

- 현재까지 충청도의 스마트팜 등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4차 산업혁명이 농업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관련 긍정·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함.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변화가 농촌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방안마련 및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좌장 유병국 의원]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농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 필요
 -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 생산성·효율성 증대, 고령화·농촌인구 감소로 인하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 및 청년실업의 대안가능성 등 4차 산업혁명이 농촌·농업의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긍정적 요인에 입각한 정책입안도 중요하나,
 - 고령농, 중·소농이 대다수인 농촌 현실에서 사회변화의 적응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이 시장개방·고령화·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문제 개선에 기여하고, 농민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 또한 패러다임 변화속에서 대농, 중·소농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2.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초래될 농업 패러다임 변화 및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한 쌍방향 정보제공 및 공감대 형성, 관련 정책입안 방안 마련 필요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생산 중심의 농정에서 공공주도의 4차 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
 - ICT 기반 시설, 관련 기술, 정보의 공유 등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논산 구도심 살리는 방안 모색

〈17. 10. 16.(월), 14:00~16:00 /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2층 공연장)〉



총 평

이번 토론회는 낙후되어 가는 논산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참석자 대부분은 낙후되어 가는 논산 구도심의 우려를 표명하고 도시 재생 차원에서 보다 세밀한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논산의 구도심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과 구도심의 역사적, 장소적 특성에 맞는 사업의 발굴과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일관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요구하였음.

주요 토론 내용

1 주제발표

<임준홍(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도시재생의 정의를 경제+생활+환경 통합정책으로 설명하고, 도시재생 선도 사업의 현황('14년도와 '15년도) 설명과 도시재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추이 설명
- 도시재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추이

구분	도시정비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
주체	토지·건물소유자 중심	지역공동체	지역주도의 주민 참여형
대상	개발이익 극대화 (수도권 노후지역)	지방대도시 및 중소도시 포함	최동
방식	대규모 철거 물리적 환경정비	사회·경제·문화·물리적 환경정비 종합적 기능개선과 활성화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지역선정(매년 110곳) 철거없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특징은 구도심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센트리피케이션 대비를 목적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분권적 재생사업 추진
 - 둘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등 민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로 발전을 꾀함
 - 셋째, LH 및 지방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 주도, 인센티브·예산·기금지원, 도시계획특례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모델 개발
-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의 비전과 추진전략 및 이를위한 세부추진과제로
 - 지역맞춤형 지역주도 추진지원, 도시재생뉴딜지역 전폭적 지원확대, 주민·영세상인등 사회적 약자보호, 사업추진·지원체계 강화

- 새 정부 뉴딜사업의 유형과 '17년도 뉴딜사업의 선정계획 그리고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시(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재생형, 일자리창출형 청년창업지원 뉴딜사업, 도시경쟁력 회복형 스마트도시기술적용 뉴딜사업등)을 설명하였다
-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평가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의 종합 평가로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쇠퇴도 등 지역특성)
 - 둘째, 사업계획의 타당성(추진체계구축, 실현가능성등)
 - 셋째, 뉴딜효과(주거복지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등)
- 논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안으로 다음과 같음
 - 논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근본적 고민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 형성
 - 논산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충남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요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설명하였으며
 - 이에 첫 번째로, 일반근린형의 경우 화지시장지구를 대상으로 도심상권활성화, 수변도시조성, 청년창업거점 조성을 방향으로 설정하여 세부적인 공간분석을 시행하였음
 - 두 번째, 우리동내살리기의 대상지로는 대교행복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안심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기반여건을 목표로 대교행복지구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공간분석을 시행하였음
 - 세 번째로는,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도시재생방향에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철도 공중육교를 통한 도시재생 방향을 신규로 제시하여 관련 사례 등을 토대로 설명하였음(ex, 로테르담 루크싱 공중육교)
- 마지막으로 논산 도시재생 추진 방향으로는
 - 사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사업연계와 추진으로 사업, 경제, 물리적 재생의

총체적 추진과 타 자원 연계 가능사업 발굴 및 통합을 추진하고

- 사업 추진시에는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협력 파트너 연계 및 지역기반 도시재생 사업조직의 육성
- 사업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비 조달의 문제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사업비 조달로써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 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한 방안으로 설명하였다.

② 지정토론

① 최상덕 (조은건설(주)대표이사)

- 논산시의 도시현황을 토대로 T자형 도시형성과 함께 구도심에 대한 설명
- 논산 구도심의 활성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도심의 활성화 방향으로는
 -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균형발전을 목표로 첫 번째, 범죄취약지역과 안전사고 위험, 두 번째, 주거환경 열악지역 개선, 세 번째 지역공동체를 주체로 삼아 사회·경제·문화적 도시를 더 윤택하게 하는 재탄생이 필요하다고 역설
- 세부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
 - 첫 번째, 종교청 사업과 연계 사업 추진하여 등화동에서 덕지동 2.78km에 대한 구도심 구간의 정비사업 추진
 - 두 번째, 상인협의회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화지 중앙시장내 퓨전음식거리 조성으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제공
 - 세 번째, 구) 기민 중학교 주변의 건축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을 통한 과거 가축시장 재현 및 스토리 텔링 도입

② 김관호(충청남도 건축도시과장)

-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정의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 절차를 설명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개년에 걸쳐 추진예정이며 우선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 추진 예정
- 사업유형은 우리 마을 가꾸기형, 주거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 총 5가지 유형임
- 선정절차는 지역주민주도 맞춤형 재생사업 대상지를 시군에서 선정 규모와 사업성격에 따라 도 및 국토부에 공모 신청, 선정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지역 확정
- 국비(50%)를 사업유형에 따라 개소당 50억~250억 지원, 지방비(50%) 투입

○ 법적절차는 다음과 같음

- 도시재생 전략계획(시·군)을 통한 사업대상지 선정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통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
- 공청회등 주민의견 수렴
-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심의

○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 다양한 모델 발굴 및 컨설팅등 지원 확대(도와 시·군, 유관기관 협업 강화)
- 다수의 중소규모 사업 추진
- 지역 커뮤니티 및 골목상권 확보
- 사회적 도시재생 추진(원주민 내몰림 방지 및 취약계층 보호)

③ 김용훈(월간 굿모닝 논산 발행인)

○ 논산시의 과거 도시재생관련 행정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구도심의 주차공간 부족 및 전무한 녹지공간으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 심화

- 둘째, 호남선 철도의 이설내지는 공중부상화등에 대한 미흡한 대처

○ 대처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

- 첫째, 구도심 재개발 청사진 제시
- 둘째, 호남선 철도의 공중 부상화를 통한 도심의 남북 분화현상 완화
- 셋째, 관촉사거리의 도시계획도로 확장
- 넷째, 화지시장 일원에 대형주차공간 확보
- 다섯째, 구 아원빌딩의 매입을 통한 공용청사등으로 활용
- 여섯째, (구) 논산군청 청사를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활용

④ 강문구(논산시 도시주택과장)

○ 논산시 구도심의 쇠퇴현황은

- 첫째, 구도심의 인구는 '00년 5.476인에서 '15년 3.414인으로 37.7% 감소함
- 둘째, 구도심의 사업체는 '06년 882개소에서 '14년 879개로 0.3% 감소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5.3%, 15.1%, 10.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셋째, 노후건축물(준공된 후 20년이상 지난 건축물)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76.9%를 차지하고 있음 ⇨ 물리적 환경 악화 유발

○ 논산시 구도심의 쇠퇴원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구도심의 인구감소(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의 인구 이전 및 40~60대 중장년층 인구 규모가 많아 자연적 인구증가의 어려움)
- 둘째, 시청사 이전(신도심 형성)
- 셋째, 신규택지 개발(취암지구, 내동1,2지구, 강산지구등)
- 넷째, 대형마트 건립(화지중앙시장 이용 축소)

○ 논산시 도시 재생 관련 추진 현황을 보고

- 첫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논산 도시재생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화지동내 설치예정)
- 논산시 도시재생대학 운영(예산 1억원)
- 도시재생 전담 행정기구 설치

3 지정토론

○ 외곽도로 개설등 구도심지역에 대한 논산시 예산배분 문제

[질의 최상덕 조은건설(주)대표이사 김용훈 월간굿모닝논산 발행인]

⇒ 논산역 재정비(90억), 대기동 침수지역 개선사업(296억), 중교천 친환경 하천개선사업(372억), 대기동 해뜰 마을 사업 추진 등 강경, 연무지역 등에 근년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분토록 노력하겠음

[답변 :강문구 논산시 도시주택과장]

4 청중토론

○ 중교천 사업에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당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방향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사업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 없이 추진되는 등의 행정의 불신임 문제 발생

[질의 증계동 주민]

⇒ 사업계획 수립시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변경에 대한 내용변경에 대해 주민설명회 절차가 마련되어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겠다

[답변 :강문구 논산시 도시주택과장]

○ 아원 백화점등의 장기 미건축 건물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 도시재생에 관련하여 군산시의 경우는 근대건축물 활성화를 통해 구도심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군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에 타 지역의 도시재생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질의 화지동 주민]

⇒ 군산의 경우 근대건축물 관련 축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사업인 강경 근대문화유산거리 축제는 도민과 함께 하지 못한 행사성 사업으로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도민의 뜻이 모여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답변 :전낙운 충청남도의회 의원]

- 화지시장 주변 주차장 개선은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주차타워 형태의 철 구조물로 구축하여 보다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락백화점과 국민은행사이의 도로를 개통함으로써 진입도로 확보로 화지시장 주변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 호남양조장 부지의 재활용방안 마련 필요
- 중교천 구간에 대한 사업방향 변경이 필요

[질의 화지동 주민 2]

- 구도심의 재개발을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의 미비점 제기
 - 하지동 우시장 주변에는 서민들의 밀집지역으로써 이 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재 입주율을 높이는 불가능한 사업구조임. 따라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리용자, 다양한 지원방안등 획기적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원백화점 등 방치되고 있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논산시의 행정적 대처가 필요

[질의 화지동 주민 3]

⇒ 영구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답변 :전낙운 충청남도의회 의원]

○ 화지1동 신규 아파트 부지내의 신규초등학교로 초등학생들의 등교로 인하여 반월초등학교 폐교 우려

○ 중교천 사업에 대한 회의감 증대

[질의 화지동 주민 4]

○ 마무리 말씀으로 본 의정토론회의 좌장인 전낙운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정리

▷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많은 의견과 적극적 계획 참여를 통해 보다 희망찬 논산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답변 전낙운 충청남도의회 의원]

결과 및 성과

<도출 과제>

1. 논산 구도심지역의 쇠퇴현황과 특성
 2.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현황과 방향, 추진계획
 3. 논산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 설정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논산 구도심지역의 쇠퇴실태와 관련 의견 수렴
-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주요 정책 동향과 논산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 방향의 보완책 논의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전망

〈17. 10. 17.(화), 15:00~17:00 / 충남연구원 중회의실〉



총 평

금번 토론회는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전망이란 주제로 청년실업 문제의 사회고착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가 및 지역차원의 해법모색을 논의하는 자리로

참가자 대부분은 청년층 노동력의 규모 및 구성은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 맞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의 해법을 찾기위해 각종 프로그램과 연구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제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으며,

또한, 청년실업문제의 주 원인으로는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노동 수요 간 미스매치에 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 혁신이 필요하며, 단순한 지원 프로그램 보다는 충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맞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대한 평가기능의 필요하다는 결론을 토론을 통해 도출하였음.

주요 토론 내용

1 주제발표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 경제연구부 교수》

- 한국경제의 고용문제는 현실적 인식이 떨어지고 있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는 것이 어려우며, 나아가 최근의 한반도의 정세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중앙정부만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간자 역할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또한, 대학의 구조조정과 교육혁신은 청년실업문제의 주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사항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는가의 여부보다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인력과 기존에 근로활동을 수행하던 근로자들이 그들의 자격과 직무수행 역량을 증대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킴으로서 일자리 mismatches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성장과 분배, 삶의 질 모두 정제적 상황이며 앞으로는 노동력의 과잉공급이 아니라 노동력의 공급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거시적으로 대학교육이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미시적 정책도 제대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임.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 단계에서 외국인력 정책논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동력의 질적 수준향상, 필요한 분야의 적정한 외국인력 공급 등의 정책기조가 우선 될 필요가 있음.
- 국내 노동시장의 초과공급 지속 및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기반확대가 절실한 상황으로 2017년부터 은퇴연령이 늦어지고 청년·여성의 저고용률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이 시급하여 당분간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의 질적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고, 외국인력 수요 또한 저속

련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내국인 일자리 기반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어서 외국인력 공급확대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내국인 고용창출 기반확대 및 외국인력 유입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외국인력 도입전략을 추진하여 내국인 노동력 활용도 제고 및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스매치 직종에 대한 보완적 외국인력 활용 전략을 추진해야 함.

《 신동호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충남의 외국인 고용인 실태에 대하여 연구 결과, 현재 충남은 국내인력의 구인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외국인력의 고용비용이 내국인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구인란 그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이며, 추후 연구결과에 응답한 업체의 대부분은 현재 외국인력 고용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는 현재, 도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중소기업체의 만성화된 인력 수급란은 내국인력의 중소기업체 기피가 주된 원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함.
- 다시 말해, 도내 청년계층의 구직란과 외국인력의 내국인력 대체 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의 존재가 명확치 않으므로 산업계가 당면한 구인란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외국인력의 보완적 활용가치는 지속될 것임
- 따라서 내국인을 도내 중소기업체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사업이나 임금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소기업체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구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충남도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2 지정토론

① 김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 충청남도의 경우는 경기도, 제주도, 세종시 다음으로 2002년 이후 순 전입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파악되며, 특히 2006년 이후 25~29세 사이 청년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큰 차이점이며 장점이나 이들 계층이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성장 기반으로 활용할 여건은 제대로 갖춰놓고 있는지 의문임.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기업가정신 역량지수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수준이며, 25~29세 청년 전입율이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인구도 2006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창업성장 잠재역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창업성장 기반은 인프라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요구됨.
- 충남도는 청년창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잠재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4차 산업 시대 기존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국면에 있으며, 지역차원의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교육, 기반구축, R&D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중장기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

② 김우영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현재 충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상담, 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익을 높이는 정책으로서 앞으로도 유지·발전시켜가야 할 정책임.
- 하지만 충남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임. 충남에 적정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얼마인지? 산업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공급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임.
-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충남도 차원에서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수요(인력의 수와 종류)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뿐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임.

③ 박준형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장)

- 충남 문화 콘텐츠 산업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년 발표기준을 보면,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산업의 11개 분야로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 중 3위
- 충남도는 충남경제진흥원, 충남IP,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역대학들과 함께 2011년부터 만 39세 이하의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 산업 분야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핸드메이드가 특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기의 트렌드에 맞는 3D 프린팅 제조·교육, 드론 분야의 지속적인 창업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년 평균 69.81%의 높은 유지율을 보임
- 창의인재의 상상력을 융복합 문화콘텐츠로 개발·산업화 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신성장 동력 기틀 마련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충남도·각 기초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폐교 등을 파악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기초단체 1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이후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면 충남 전역으로 확대 예정임

④ 김현철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노사협력팀장)

- 현재 충남도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단순노무와 3D업종에서 주로 근무하며 이들이 도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주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충남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취업준비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시장으로 나오지 않고 있음. 또한 이들은 사무직 종으로 취업을 원하며 제조나 화학분야를 기피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는 5개분야 49개 사업을 진행중이며,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차지하는 분야를 국내(도내) 대학생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중이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음.

⇒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과 가치를 수렴하여 추후에 있을 토론회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를 연구하여 충남도의 청년실업 해결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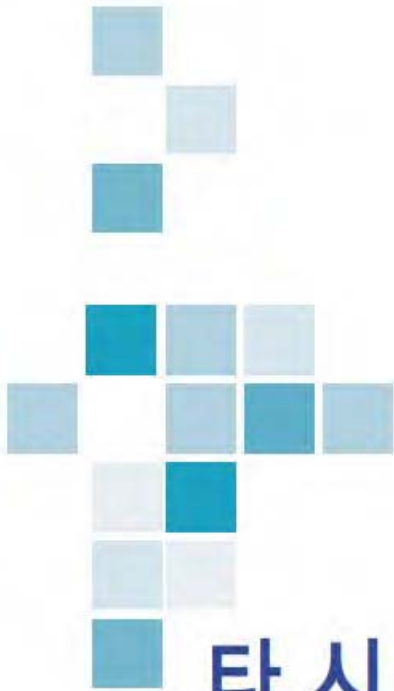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도내 청년들의 미스매치 문제점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2. 적정 외국인 노동자 수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3. 도내 기업인 및 청년단체와 충남도 간의 협업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도내 기업인 및 청년단체와 충남도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와 거버넌스의 필요성 대하여 공감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국민의 명령과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지방분권 실현 청사진 밝혀

지난 26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며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분권TF 구성하여 구체적인 분권 로드맵 마련”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를 출범시켰으며,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질의서 전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의결,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 체결,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의 성과를 차근차근 이루어냈다.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안) 마련, 국회에 발의 제안”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대안법(안)으로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하였으며, 국회에 이를 제안하여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목적, 기능, 역할, 운영 등을 별도의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자치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권력 분립과 견제를 통해 서로 균형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의회법 서울특별시의회(안)은 전체 제13장 9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의 내용을 국회법에 맞추어 구성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 지방분권관련 조항을 포함시켰다.

향후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한 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발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 의회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는 지난 10월 20일 아인 의료재단 서울여성병원을 방문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는 금년 3월부터 한국폴리텍Ⅱ대학을 시작으로 인천관광공사, 신한은행, 경인교대, 한림병원 등 현재까지 총23개 기관 및 단체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여성병원은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활동을 홍보하고 다양한 캠페인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환경조성 등에 관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 대표 박영애 시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협약에 참여한 서울여성병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더 많은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저출산 문제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오색 색도설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촉구

- 오색색도설치특별위원회 국립고궁박물관 집회 동참 -

강원도의회 오색색도 설치특별 위원회(위원장 심영곤)는 오는 10.25.(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개최시 양양군 비상대책위원회 상경 집회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경집회 동참은 지역주민과 같이 뜻을 모아 행동함으로서 색도설치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까지 앞으로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색색도설치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에 이어 10.19.(목) 최문순 강원도지사 면담을 갖고 오색색도 설치가 조기에 정상 추진 될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 서서 중앙부처 등에 당위성을 강력히 전달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특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9월 2차에 걸쳐 문화재청 허가 지연 규탄에 따른 조기 허가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오색색도 설치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적극 선도해 나갔다

강원도의회에서는

앞으로 강원도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오색색도 설치사업이 계획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의회

“진로 체험의 장으로 인기몰이”

- 의정체험 프로그램 청주대학교 학생 참여 -

충북도의회(의장 김양희)에서 운영 중인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25일 청주대학교 정치안보국제학과 학생 40여명이 참여했다.

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정치참여의 기회제공과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날은 정치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대학생 정치참여과정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체험에서 학생들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도의원이 되어 의사진행 및 조례안 심사보고, 5분 자유발언 등 실제 도의원들이 하는 일을 체험하였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작된 의정체험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사회단체 등 일반인으로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은 물론 대화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진로체험의 장으로 큰 인기를 얻어 현재까지 24회 550여명이 참여했다.

김양희 도의장은 “도민과의 약속인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도의회 본회의장 등 의회시설도 상시 개방해 도민과 함께 적극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18.4.25.] [법률 제14957호, 2017.10.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며, 식용란의 출하시 산란일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민간의 감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포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제12조제4항 신설).

나.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제12조의2제2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라.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2조).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4항 신설).

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제39조).

2.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18.10.25.] [법률 제14920호, 2017.10.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최근 증대되고 있는 시설물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진 · 화산방재정책심의회 기능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진 · 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 · 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9조의3).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들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제1항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제1항 신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7년 10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3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